

# 순천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1506호 2023. 7. 31. (월)

## 입 법 예 고

순천시 공고 제2023-1610호 순천시 농산물 도매시장 시설물 관리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2
순천시 공고 제2023-1611호 순천시 농산물 도매시장 업무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6
순천시 공고 제2023-1632호 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12
순천시 공고 제2023-1636호 순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8
순천시 공고 제2023-1652호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2
순천시 공고 제2023-1666호 순천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30

## 행 정 예 고

순천시 공고 제2023-1659호 순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	34
---	----

## 고 시

순천시 황전면 고시 제2023-3호 하천점용허가고시 .....	39
순천시 고시 제2023-146호 사도개설허가 고시 .....	40
순천시 고시 제2023-147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	41
순천시 고시 제2023-152호 순천시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43
순천시 고시 제2023-153호 도로명주소 고시 .....	48

## 공 고

순천시 공고 제2023-1602호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	51
순천시 공고 제2023-1650호 순천시금고 지정 신청 공고 .....	52

회 람										
-----	--	--	--	--	--	--	--	--	--	--

발행 : 순천시

편집 : 홍보실 (☎ 749-5707, FAX 749-4625)

# 입 법 예 고

순천시 공고 제2023-1610호

순천시 농산물 도매시장 시설물 관리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31일

## 순 천 시 장

### 순천시 농산물 도매시장 시설물 관리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1. 폐지이유

- 「순천시 농산물 도매시장 업무 규정」에 통합되었으며, 불합리한 권리제한 등 현실여건에 불부합, 실효성이 없어 기존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 2. 입법예고 기간 : 2023. 7. 31. ~ 2023. 8. 21.

#### 3. 의견제출

- 이 규칙폐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천시장(농식품유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화) 061-749-8811 (팩스) 061-749-4676

4. 그 밖의 사항

- 규칙폐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농식품유통과(☎ 061-749-88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순천시 농산물 도매시장 시설물 관리 규칙 폐지규칙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 순천시 농산물 도매시장 시설물 관리 규칙 폐지규칙안

순천시 농산물 도매시장 시설물 관리 규칙은 폐지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순천시 농산물 도매시장 시설물 관리 규칙」 폐지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자치법규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순천시 공고 제2023-1611호

순천시 농산물 도매시장 업무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31일

## 순 천 시 장

### 순천시 농산물 도매시장 업무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 법조항 정정
- 현실에 부합하도록 내용 개정

#### 2.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 법조항 정정
  - 제1조(목적) 조례 “제13조”를 → “제14조”로 정정
  - 제53조(표준송품장의 양식 및 관리)
    - ① “법 제71조제2항”을 → “법 제41조제3항”으로 정정
  - 제80조(관리부과금의 징수)
    - ② “제58조, 제59조 및 제61조”를 → “제58조, 제59조”로 정정
  - 제97조(과징금 처분)
    - ① “법 제83조제2항”을 → “법 제83조제3항”으로 정정
    - ① “시행규칙 제57조”를 → “시행령 제36조의4”로 정정

## ○ 현실에 부합하도록 내용 개정

## ● 제2조(도매시장의 명칭·장소 및 면적)

– 건물 면적 “30,940”㎡ → “31,426”㎡로 현실화

## ● 제89조의2(규격출하품의 결정)

– “재분류 작업 없이 또는 재분류 작업 후” → “또는 재분류 작업 후” 삭제

## 3. 입법예고 기간 : 2023. 7. 31. ~ 2023. 8. 21.

##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천시농식품유통과(농식품유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화) 061-749-8811 (팩스) 061-749-4676

## 5.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농식품유통과(☎061-749-88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순천시 농산물 도매시장 업무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 순천시 농산물 도매시장 업무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순천시 농산물 도매시장 업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3조”를 “제14조”로 한다.

제2조 본문 외 표 중 면적의 건물 부분 “30,940”을 “31,426”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법 제71조제2항”을 “법 제41조제3항”으로 한다.

제80조제2항 중 “제58조, 제59조 및 제61조”를 “제58조, 제59조”로 한다.

제89조의2 중 “재분류 작업 없이 또는 재분류 작업 후 경매가 이루어지는”을 “재분류 작업 없이 경매가 이루어지는”로 한다.

제97조제1항 중 “법 제83조제2항”을 “법 제83조제3항”으로 하고, “시행규칙 제57조”를 “시행령 제36조의4”로 한다.

###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p>여 전기·가스·상하수도·냉난방·청소비 기타 시설사용에 따른 부과금(이하 “관리비”라 한다)을 매월 징수한다.</p>	<p>----- ----- ----- ----- -----.</p>
<p>② 제58조, 제59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와 제1항에 의한 관리비 징수를 위하여 시장은 납입기간·납입금액·납입장소 등을 기재하여 납기마감 7일 전까지 납입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p>	<p>② 제58조, 제59조의 ----- ----- ----- ----- -----.</p>
<p>③ ~ ⑤ (생략)</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제89조의2(규격출하품의 결정) 제89조제1항 및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규격출하품은 파렛트에 적재된 상태로 반입되어, 반입 즉시 하역기계화가 가능하고, <u>재분류 작업 없이 또는 재분류 작업 후 경매가 이루어지는 국내산 농산물로 한다.</u></p>	<p>제89조의2(규격출하품의 결정) ----- ----- ----- ----- ----- -----재분류 작업 없이 경매가 이루어지는 국내산 농산물로 한다.</p>
<p>제97조(과징금 처분) ① 시장이 법 제83조제2항에 의거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게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u>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한다.</u></p>	<p>제97조(과징금 처분) ① -----법 제83조제3항----- ----- -----시행령 제36조의4-----.</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순천시 농산물 도매시장 업무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자치법규 내용	찬성 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순천시 공고 제2023-1632호

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31일

## 순 천 시 장

### 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지역보건법」 제34조 일부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 2. 주요내용

- 제1조 중 “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을 “ 「지역보건법」 제34조 제3항”으로 한다.
- 제2조 중 “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을 “ 「지역보건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3. 입법예고 기간 : 2023. 7. 31. ~ 2023. 8. 21.(20일간)

####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천시장(보건의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팩스) 061-749-4684

#### 5.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보건의료과(☎ 061-749-68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 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을 “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제2조 중 “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을 “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 관련)**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에 적용하며,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각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통보한날로부터 다시 동일 위반사항으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다. 위반행위가 4차 이상일 때에는 3차 위반금액을 부과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부과금액(단위 : 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1000	2000	3000
2.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	100	200	300
3.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	100	200	3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 ----- ----- -----.</p>																																											
<p>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p>		<p>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 ----- -----.</p>																																											
<p>[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 관련)</p>		<p>[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 관련)</p>																																											
<p>1. 일반기준</p>		<p>1. 일반기준</p>																																											
<p>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p>		<p>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p>																																											
<p>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에 적용하며,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각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통보한날로부터 다시 동일 위반사항으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한다.</p>		<p>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에 적용하며,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각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통보한날로부터 다시 동일 위반사항으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한다.</p>																																											
<p>다. 위반행위가 4차 이상일 때에는 3차 위반금액을 부과한다.</p>		<p>다. 위반행위가 4차 이상일 때에는 3차 위반금액을 부과한다.</p>																																											
<p>2. 개별기준</p>		<p>2. 개별기준</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위반사항</th> <th rowspan="2">근거법령</th> <th colspan="3">부과금액(단위 : 만원)</th> </tr> <tr> <th>1차위반</th> <th>2차위반</th> <th>3차위반</th> </tr> </thead> <tbody> <tr> <td>1.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td> <td>「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제1호</td> <td>100</td> <td>200</td> <td>300</td> </tr> <tr> <td>2.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td> <td>「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제2호</td> <td>100</td> <td>200</td> <td>300</td> </tr> </tbody> </table>		위반사항	근거법령	부과금액(단위 : 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제1호	100	200	300	2.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제2호	100	200	300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위반사항</th> <th rowspan="2">근거법령</th> <th colspan="3">부과금액(단위 : 만원)</th> </tr> <tr> <th>1차위반</th> <th>2차위반</th> <th>3차위반</th> </tr> </thead> <tbody> <tr> <td>1.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td> <td>「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td> <td>1000</td> <td>2000</td> <td>3000</td> </tr> <tr> <td>2.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td> <td>「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td> <td>100</td> <td>200</td> <td>300</td> </tr> <tr> <td>3.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td> <td>「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td> <td>100</td> <td>200</td> <td>300</td> </tr> </tbody> </table>			위반사항	근거법령	부과금액(단위 : 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1000	2000	3000	2.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	100	200	300	3.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	100	200	300
위반사항	근거법령			부과금액(단위 : 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제1호	100	200	300																																									
2.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제2호	100	200	300																																									
위반사항	근거법령	부과금액(단위 : 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1000	2000	3000																																									
2.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	100	200	300																																									
3.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	100	200	300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자치법규 내용	찬성 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순천시 공고 제2023-1636호

순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31일

## 순 천 시 장

### 순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경기 불확실성 지속 전망에 따른 기업대출의 꾸준한 증가와 연체율 상승
- 우리시 경제활성화 및 인력창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등 기여

#### 2. 주요내용

- (안 제1조) 소관 법률의 변경
  - 현행 :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17
  - 변경 :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안 제3조제3항) 존속 기한 연장

- 현행 : “2023년 9월 30일”

- 변경 : “2027년 9월 30일”

3. 입법예고 기간 : 2023. 7. 31. ~ 2023. 8. 21.(22일간)

####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천시(신성장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팩스) 061-749-4628

#### 5.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신성장산업과(☎061-749-4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순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 순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 을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2023년 9월 30일” 을 “2027년 9월 30일”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에 따라 순천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 ----- ----- ----- ----- -----.</p>
<p>제3조(기금의 설치) ①·②(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9월 30일까지로 하고,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p>	<p>제3조(기금의 설치) ①·②(한행과같음) ③ ----- ----- 2027년 9월 30일----- ----- -----.</p>

순천시 공고 제2023-1652호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31일

## 순 천 시 장

###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도서관법」의 개정(2022.12.8.시행)에 따른 인용조문 및 띄어쓰기 정비
- 신대도서관 신축에 따른 도서관 위치 변경 및 이용시간 현행화
- 부대시설 관리 조항 근거 마련으로 안전한 도서관서비스 제공

#### 2. 주요내용

- (안 제5조) 시립도서관 열람실 및 자료실 이용시간 현행화
  - (열람실) 08:00~23:00 → 08:00~22:00 (자료실) 토·일요일 08:00~18:00 → 09:00~22:00
- (안 제12조) 신축 신대도서관 개관에 따른 시설 사용료 추가, 띄어쓰기 정비, 주차장 요금 징수 근거 마련

- 시장은 시립도서관 내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 (안 제16조) 제목 변경, 주차장 안전관리 조항 신설

- (제목) 변상 → 변상 등
- 이용자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 손해나 인명피해 경우 원상복구나 손해배상

○ (안 제18조)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 「도서관법」 제30조 → 「도서관법」 제34조

별표 1,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3. 입법예고 기간 : 2023. 7. 31. ~ 8. 21.(21일간)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천시(도서관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팩스) 061-749-4714

5.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도서관운영과(☎ 061-749-66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이용시간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열람실	자료실	
		평일	토·일요일
삼산·연향·조례호수·신대 도서관	08:00~22:00	09:00~22:00	
해룡농어촌·풍덕글마루 도서관	09:00~18:00		

제1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시립도서관 내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의 제목 “(변상)”을 “(변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주차장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의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이용자는 관리자에게 알리고,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시장은 주차장 내 발생 가능성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8조 중 “ 「도서관법」 제30조”를 “ 「도서관법」 제34조”로 한다.

별표 1,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이용시간) 도서관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계절별 또는 도서관 운영상 필요시에는 조정할 수 있다.</p>		<p>제5조(이용시간) ----- ----- -----.</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rowspan="2">열람실</th> <th colspan="2">자료실</th> </tr> <tr> <th>평일</th> <th>토·일요일</th> </tr> </thead> <tbody> <tr> <td>삼산·연항·조례호수·신대도서관</td> <td>08:00-23:00</td> <td>09:00-22:00</td> <td>08:00-18:00</td> </tr> <tr> <td>해동농어촌·종덕골마루도서관</td> <td colspan="3">09:00-18:00</td> </tr> </tbody> </table>		구 분	열람실	자료실		평일	토·일요일	삼산·연항·조례호수·신대도서관	08:00-23:00	09:00-22:00	08:00-18:00	해동농어촌·종덕골마루도서관	09:00-18:00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rowspan="2">열람실</th> <th colspan="2">자료실</th> </tr> <tr> <th>평일</th> <th>토·일요일</th> </tr> </thead> <tbody> <tr> <td>삼산·연항·조례호수·신대도서관</td> <td>08:00-22:00</td> <td colspan="2">09:00-22:00</td> </tr> <tr> <td>해동농어촌·종덕골마루도서관</td> <td colspan="3">09:00-18:00</td> </tr> </tbody> </table>			구 분	열람실	자료실		평일	토·일요일	삼산·연항·조례호수·신대도서관	08:00-22:00	09:00-22:00		해동농어촌·종덕골마루도서관	09:00-18:00		
구 분	열람실			자료실																												
		평일	토·일요일																													
삼산·연항·조례호수·신대도서관	08:00-23:00	09:00-22:00	08:00-18:00																													
해동농어촌·종덕골마루도서관	09:00-18:00																															
구 분	열람실	자료실																														
		평일	토·일요일																													
삼산·연항·조례호수·신대도서관	08:00-22:00	09:00-22:00																														
해동농어촌·종덕골마루도서관	09:00-18:00																															
<p>제12조(시설의 사용료 등) ① ~ ③ (생략) &lt; 신 설 &gt;</p>		<p>제12조(시설의 사용료 등) ①~③(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시립도서관 내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p>																														
<p>제16조(변상) ① ~ ② (생략) &lt; 신 설 &gt;</p>		<p>제16조(변상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주차장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의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이용자는 관리자에게 알리고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은 주차장 내 발생 가능성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p>																														
<p>&lt; 신 설 &gt;</p>																																
<p>제18조(설치) 「도서관법」 제30조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해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설치한다.</p>		<p>제18조(설치) 「도서관법」 제34조----- ----- -----.</p>																														

현 행

[별표 1] <개정 2014.09.11, 2016.11.10>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제4조 관련)

명 칭	위 치
삼산도서관	순천시 중앙로 232(석현동)
그림책도서관	순천시 도서관길 33(동외동)
연향도서관	순천시 연향변영길 54(연향동)
기적의도서관	순천시 해룡면 기적의 도서관길 60
조례호수도서관	순천시 조례2길 81(조례동)
해룡농어촌도서관	순천시 해룡면 해룡로 1120
풍덕금마루각은도서관	순천시 풍덕1길 52(풍덕동)
신대도서관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1971

[별표 3] <개정 2014.09.11>

도서관 시설 사용시간표(제12조 관련)

사용기준	사용시간	비 고
오전	09:00 ~ 13:00	
오후	14:00 ~ 18:00	
야간	18:00 ~ 22:00	
1일	09:00 ~ 22:00	

※ 1회 사용시간은 4시간으로 하며,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때에도 1회 사용으로 본다.

도서관 시설 사용료(제12조 관련)

○ 도서관 시설 사용료

도서관별	시설명	규 모	사 용 료		비 고
			1회(4시간)	1일	
삼산도서관	시청각실	계단식 객석90석	70,000	180,000	프로젝트 전자책관, 음향
	1강의실	80석	50,000	130,000	프로젝트 전자책관, 음향
	2강의실	50석	40,000	100,000	전자책관, 음향
	3강의실	20석	20,000	50,000	
	동아리방	10석 내외	15,000	40,000	
그림책도서관	강의실	40석 내외	30,000	80,000	프로젝트, 음향
	동아리방	20석 내외	20,000	50,000	프로젝트, 음향
연향도서관	종극장	계단식객석214석	120,000	300,000	프로젝트, 음향
	1강의실	50석	40,000	100,000	
	2강의실	30석	25,000	60,000	
	토론실	20석	20,000	50,000	
	전시실	142㎡	-	40,000	
조례호수 도서관	강당	계단식객석120석	80,000	200,000	프로젝트, 음향
	세미나실	20석 내외	20,000	50,000	
기적의 도서관	강 당	150 ~ 200명	100,000	250,000	프로젝트, 음향
	1강의실	30석	25,000	60,000	
	2강의실	20석	20,000	50,000	

개 정 안

[별표 1] <개정 2014.09.11, 2016.11.10>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제4조 관련)

명 칭	위 치
삼산도서관	순천시 중앙로 232(석현동)
그림책도서관	순천시 도서관길 33(동외동)
연향도서관	순천시 연향변영길 54(연향동)
기적의도서관	순천시 해룡면 기적의 도서관길 60
조례호수도서관	순천시 조례2길 81(조례동)
해룡농어촌도서관	순천시 해룡면 해룡로 1120
풍덕금마루도서관	순천시 풍덕1길 52(풍덕동)
신대도서관	순천시 해룡면 과야로 71

[별표 3] <개정 2014.09.11>

도서관 시설 사용시간표(제12조 관련)

사용기준	사용시간	비 고
오전	09:00 ~ 13:00	
오후	14:00 ~ 18:00	
야간	18:00 ~ 22:00	
1일	09:00 ~ 22:00	

※ 1회 사용시간은 4시간으로 하며,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때에도 1회 사용으로 본다.

도서관 시설 사용료(제12조 관련)

도서관별	시설명	규 모	사 용 료		비 고
			1회(4시간)	1일	
삼산도서관	시청각실	계단식 객석90석	70,000	180,000	프로젝트 전자책관, 음향
	1강의실	80석	50,000	130,000	프로젝트 전자책관, 음향
	2강의실	50석	40,000	100,000	전자책관, 음향
	3강의실	20석	20,000	50,000	
	동아리방	10석 내외	15,000	40,000	
그림책도서관	강의실	40석 내외	30,000	80,000	프로젝트, 음향
	동아리방	20석 내외	20,000	50,000	프로젝트, 음향
연향도서관	종극장	계단식객석214석	120,000	300,000	프로젝트, 음향
	1강의실	50석	40,000	100,000	
	2강의실	30석	25,000	60,000	
	토론실	20석	20,000	50,000	
	전시실	142㎡	-	40,000	
조례호수 도서관	강당	계단식 객석120석	80,000	200,000	프로젝트, 음향
	세미나실	20석 내외	20,000	50,000	
기적의 도서관	강 당	150 ~ 200명	100,000	250,000	프로젝트, 음향
	1강의실	30석	25,000	60,000	
	2강의실	20석	20,000	50,000	
신대도서관	강당	120명	80,000	200,000	프로젝트, 음향
	극장	계단식 객석52석	25,000	60,000	프로젝트, 음향
	1강의실	40석	30,000	80,000	프로젝트 전자책관, 음향
	2강의실	20석	20,000	50,000	프로젝트 전자책관, 음향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자치법규 내용	찬성 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순천시 공고 제2023-1666호

「순천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31일

## 순 천 시 장

### 순천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2023. 3. 21.)에 따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구역별 조례 제정이 필요함
- 달라진 자동차의 내구성·품질 향상 등을 반영을 통해 유연한 차령제도 운영으로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기본차령 추가 연장 조건 마련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합격한 자동차는 자동차의 기본 차령에 2년 더 할 수 있음.

#### 3. 입법예고 기간 : 2023. 7. 31. ~ 2023. 8. 21.(21일간)

#### 4. 의견 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천시청(교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팩스) 061-749-4761

#### 5. 그 밖의 사항

○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교통정책과((☎ 061-749-59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순천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 붙임1

## 조례 제정[안]

## 순천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서 위임한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사업구역별 연장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택시운송사업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제3조(차령)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합격한 자동차는 자동차의 기본 차령에 2년을 더 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붙임2**

**의견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자치법규 내용	찬성 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 행 정 예 고

순천시 공고 제2023-1659호

## 순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순천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  
에 따라 지정 위치 및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2023. 7. 31.

## 순 천 시 장

### 1. 행정예고내용

- 내 용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 목 적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 관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  
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 2. 관련 근거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11조의6
- 「행정절차법」 제46조

3. 행정예고기간 : 2023. 7. 31. ~ 2023. 8. 19. (20일간)

4.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시설 및 위치(붙임 참조)

시설명	위치	비고
우석, 가곡어린이집	순천시 대흥교~선평리 752-5	신규 지정
현대제철순천어린이집	순천시 해룡면 신대4길 4-55	신규 지정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붙임2)를 작성하여 순천시 도로과 도로정비2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 2023. 7. 31. ~ 2023. 8. 19. (20일)

○ 의견제출 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지정 여부에 관한 사항)

○ 의견제출 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61-749-4670)

○ 보내실 곳 : 순천시 도로과 - 순천시 장명로 45 (☎ 061-749-6347)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위치도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위치도



위치도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sup>2</sup>) 또는 증질지(80g/m<sup>2</sup>)]

# 고 시

순천시 황전면 고시 제2023-3호

## 하천 점 용 허 가 고 시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하천점용허가의 고시)에 의거하여 하천점용허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7. 31.

## 황 전 면 장

- 다 음 -

- 1. 하천 명칭 : 평촌천(지방하천)
- 2. 점용자 성명 : 한국전력공사 순천지사장
- 3. 점용자 주소 : 순천시 순천대2길 13번지
- 4. 점용 목적 : 전력공급을 위한 전주신설
- 5. 점용 위치 : 순천시 황전면 평촌리 784번지
- 6. 점용 면적 : A=2m<sup>2</sup>
- 7. 점용 기간 : 2023. 7. 26. ~ 2028. 7. 25.

순천시 고시 제2023-146호

## 사도개설허가 고시

사도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사도개설허가 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7. 20.

## 순 천 시 장

1. 허 가 번 호 : 제2023-01호
2. 성 명 : 최두식(대한불교조계종 송광사)
3. 주 소 :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송광사안길 100
4. 사도개설 허가규모
  - 사도의 면적 : 1,103m<sup>2</sup>
  - 사도의 규모 : L=105m, B=6m
5. 사도개설허가 재산의 표시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m <sup>2</sup> )	신청면적 (m <sup>2</sup> )	목 적	비 고
계				1,103		
송광면 신평리	284	답	5,395	201	종교집회장 진출입로	
	286	답	3,131	544		
	290-1	답	807	120		
	290-6	답	466	192		
	291-6	답	470	32		
	220	답	2,172	14		

순천시 고시 제2023-147호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순천시 고시 제2018-113호(2018.7.30.) 및 제2021-147호(2021.7.27.)로 고시 및 변경 고시된 순천시 연향동·해룡면 대안리 일원(연향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29일

## 순 천 시 장

### 1. 해제지역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순천시 연향동 및 해룡면 대안리 일원
- 면 적 : 645,253m<sup>2</sup>

### 2. 해제일 : 2023. 7. 29.

### 3. 해제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 만료

### 4. 관계도면 : 게재생략

## 5. 기타사항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며, 기타 문의사항은 순천시 도시계획과(☎061-749-66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천시 고시 제2023-152호

## 순천시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순천시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1호(신월지구)]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 7. 31.

# 순 천 시 장

1. 순천시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1호(신월지구)] 변경 결정 도면 : 붙임
2. 순천시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도면 : 붙임
3. 관계도서는 순천시청 공원녹지과(☎061-749-865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순천시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조서

### ■ 1. 순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 ○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봉화산공원	근린공원	조곡동, 조례동, 용당동, 생목동, 서면 일원	4,934,266	-	4,934,266	1972.4.12. (건고-134)	

### 2. 봉화산 근린공원(신월지구)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 1) 위 치

- 순천시 조례동 일원

#### 2) 면 적

- 부지면적 (기정)100,432m<sup>2</sup>(공원시설 81,835m<sup>2</sup>, 비공원시설 18,597m<sup>2</sup>)  
(변경)108,395m<sup>2</sup>(공원시설 89,784m<sup>2</sup>, 비공원시설 18,611m<sup>2</sup>)  
(증·△감)7,963m<sup>2</sup>(공원시설 7,949m<sup>2</sup>, 비공원시설 14m<sup>2</sup>)

#### 3) 변경사유

- 주민 민원요청으로 송전선로 지중화 및 지상, 지중연결 송전탑 위치의 변경
-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규정에 따른 공원 내 화장실 진입로의 경사변경으로 인한 산책로 내 계단 설치

#### 4) 근거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시행령 제25조, 제27조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21조의2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 5)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총괄표(신월지구)

구 분	변경 구분	시 설 내 용	부지면적 (㎡)	건축면적(㎡)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기정	합 계	100,432	23.00	23.00	
	변경	합 계	108,395	22.00	22.00	
시설소계	기정	시설소계	9,487	23.00	23.00	시설율 9.4%
	변경	시설소계	10,316	22.00	22.00	시설율 9.5%
도로 /광장	기정	도로 및 광장	5,016			
	변경	도로 및 광장	5,941			증)925
조경시설	기정	실개천	1,496			
	변경	실개천	1,343			감)153
휴양시설	기정	휴게쉼터	495			
	변경	휴게쉼터	538			증)43
유희시설	기정	기적의놀이터	1,530			
	변경	기적의놀이터	1,350			감)180
편익시설	기정	주차장 외 1종	950	23.00	23.00	
	변경	주차장 외 1종	870	22.00	22.00	감)80
관리시설	기정		0			
	변경	전기공급설비	274			증)274
녹지소계	기정	녹지소계	90,945			녹지율 90.6%
	변경	녹지소계	98,079			녹지율 90.5%

## 6)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세부시설 결정 조서(신월지구)

시설구분		시설 번호	시설명	면 적(m <sup>2</sup> )	건축면적(m <sup>2</sup> )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기정			100,432	23.00	23.00	시설율 9.4%
	변경			108,395	22.00	22.00	시설율 9.5%
도로 및 광장	기정		소 계	5,016			
	변경		소 계	5,941			증)925
	기정		도 로	5,016			
	변경		도 로	5,941			
조경 시설	기정		소 계	1,496			
	변경		소 계	1,343			감)153
	기정	2-12	실개천	1,496			
	변경	2-12	실개천	1,343			
휴양 시설	기정		소 계	495			
	변경		소 계	538			증)43
	기정	3-12	만남의 광장	395			
	변경	3-12	만남의 광장	430			
	기정	3-13	휴게쉼터	100			
	변경	3-13	휴게쉼터	108			
유희 시설	기정		소 계	1,530			
	변경		소 계	1,350			감)180
	기정	6-6	기적의놀이터	1,530			
	변경	6-6	기적의놀이터	1,350			
편익 시설	기정		소 계	950	23.00	23.00	
	변경		소 계	870	22.00	22.00	감)80
	기정	7-27	주 차 장	929			
	변경	7-27	주 차 장	848			
	기정	7-28	화 장 실	21	23.00	23.00	
	변경	7-28	화 장 실	22	22.00	22.00	
관리 시설	기정		소 계	0			
	변경		소 계	274			증)274
	신설	8-7	전기공급설비	274			
녹지 및 기타 시설	기정		소 계	90,945			녹지율 90.6%
	변경		소 계	98,079			녹지율 90.5%
	기정	9	녹 지	90,945			
	변경	9	녹 지	98,079			

## 7) 연결도로 결정 조서(신월지구)

구분	규모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 점	종 점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기정	소 계				1,155 (1,662)	5,016 (5,723)				
변경	소 계				1,340 (1,757)	5,941 (6,620)				
기정	중로	2	1	15	144	2,188	진입로	조례동 산144-1	조례동 산144-1	
기정	중로	2	2	15	131	864	진입로	조례동 1519-9	조례동 1519-28	
기정	중로	3	1	12	92	415	진입로	조례동 산144-1	조례동 산145-1	
기정	소로	3	62	1.5	275 (298)	371 (406)	"	조례동 산137	조례동 산147-2	둘레길
변경	소로	3	62	1.5	275 (298)	413 (447)	"	조례동 산137	조례동 산147-2	둘레길
폐지	소로	3	201	1.5	89 (209)	115 (301)	"	조례동 1473-1	조례동 산145-1	둘레길
신설	소로	3	214	1.5	36 (330)	54 (546)	숲길 산책로	조례동 산137	조례동 산119-1	
기정	소로	3	215	1.5	123	207	숲길 산책로	조례동 산137	조례동 산133-1	
변경	소로	3	215	1.5	195 (295)	293 (446)	숲길 산책로	조례동 산134-1	조례동 산133-1	
기정	소로	3	218	2.5	60	158	산책로	조례동 1507-2	조례동 산133-1	
변경	소로	3	218	4	204	816	산책로	조례동 1519-42	조례동 산133-1	
기정	소로	3	219	3	35	101	산책로	조례동 144-1	조례동 144-1	
기정	소로	3	220	3	62	216	산책로	조례동 144-1	조례동 산137	
변경	소로	3	220	5	67	335	산책로	소로 3-221	조례동 산137	
기정	소로	3	221	2.5	144	381	연결로	조례동 1519-1	조례동 산137	
변경	소로	3	221	3	140	420	연결로	소로 3-218	소로 3-220	
신설	소로	3	235	2	21	42	연결로	소로 3-219	소로 3-220	

## 3. 지형도면 : 공원녹지과 사무실 내 비치

순천시 고시 제2023-153호

###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 부여(신규변경·폐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7. 31.

## 순 천 시 장

○ 도로명주소 :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주석로 98외 18건(신규16 / 변경2 / 폐지1)

종전 주소	도로명 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b>별 도 열 램</b>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토지정보과(☎749-552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므로, 공공기관에서 민원 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연번	고시사유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	건물번호 부여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공각리 772-1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공각리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주석로 98	20230731	20090703	주암면과 석곡면을 연결하는 도로로 면 행정명칭조할	
2	"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율령리 103-1, 102, 102-1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율령리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율령동두길 521	20230731	20100325	자연마을 운용에서 용두간 진입 노선으로 이를 인용 도로명 부여	
3	" 전라남도 순천시 교량동 195-4	전라남도 순천시 교량동 195-4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만길 433-43 (교량동)	20230731	20070206	국가지정 명승 제41호 순천만 인용 도로명 부여	
4	"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덕산리 153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덕산리 153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큰골길 13	20230731	20181026	자연지명 큰골 진입노선으로 큰골 인용	
5	"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비촌리 315-4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비촌리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서동2길 5	20230731	20100415	자연마을 서동 진입 노선으로 이를 인용 도로명 부여	
6	"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초곡리 705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초곡리 705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무적골길 66	20230731	20181026	자연지명 무적골 진입노선으로 무적골 인용	
7	"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1159, 1159-1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울촌신단4로 26-222	20230731	20121123	울촌신단단지 명칭 인용 도로명 부여	
8	"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2137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매인으로 16	20230731	20110719	옛 자연마을 매안 지명인용 도로명부여	
9	" 전라남도 순천시 덕암동 301-8	전라남도 순천시 덕암동 301-8	전라남도 순천시 덕암2길 15 (덕암동)	20230731	20100415	덕암길 지선으로 이를 인용 순차적으로 도로명 부여	
10	" 전라남도 순천시 교량동 172-11	전라남도 순천시 교량동 172-11	전라남도 순천시 학동길 76-50 (교량동)	20230731	20100503	자연마을 학동의 진입 노선으로 이를 인용 도로명	
11	" 전라남도 순천시 외서면 도신리 670	전라남도 순천시 외서면 도신리 670	전라남도 순천시 외서면 도신101터미널길 80	20230731	20190415	자연지명 도신, 이탐골 인용	
12	"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신전리 372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신전리 372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신전동촌길 3-42	20230731	20210331	옛부터 사용하는 신전과 동촌 인용 도로명 부여	
13	"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비촌리 556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비촌리 556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칠안길 127	20230731	20100503	자연마을 칠안의 진입노선으로 이를 인용 도로명 부여	
14	" 전라남도 순천시 가곡동 1028-11	전라남도 순천시 가곡동 1028-11	전라남도 순천시 원가곡1길 12-1 (가곡동)	20230731	20100415	자연마을인 원가곡마을의 진입노선으로 이를 인용하여 순차적으로 도로명부여	

연번	고시사유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5	건물번호 부여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덕정리 937-8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승곡길 89-60	20230731	20071001	자연마을 승곡을 인용 도로명 부여	
16	"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북성리 신42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상비매봉길 42	20230731	20070207	자연마을 상비에서 매봉간 진입 노선으 로 이를 인용 도로명 부여	
17	건물번호 변경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승곡길 145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승곡길 89-44	20230731	20071001	자연마을 승곡을 인용 도로명 부여	
18	건물번호 분할변경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만길 27 (덕월 동) (도시동행정복지센터)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만길 27-1 (덕 월동)(도시동주민자치센터)	20230731	20070206	국가지정 명승 제41호 순천만 인용 도로 명 부여	
19	건물번호 폐지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율봉용두길 521		20230731	20100325	자연마을 율봉에서 용두간 진입 노선으 로 이를 인용 도로명 부여	철거후 신축

공

고

순천시 공고 제2023-1602호

##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우리시 관내 도로, 자전거 주차장 및 기타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관 중인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에 따라 처분(매각, 기증, 공공자전거 활용 등)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1일

# 순 천 시 장

1. 공고명 :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2. 기간 : 2023. 7. 21. ~ 8. 4. (공고일로부터 15일간)
3. 대상 : 무단방치 자전거 12대(붙임참조)
4. 보관장소 : 순천시 자전거문화센터(☎061-749-6348)
5. 처분예정일 : 2022. 8. 6.이후
6. 내용
  -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공고 기간까지 자전거를 회수하기 바라며, 공고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처분(매각, 기증, 공공자전거 활용 등)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 기증 및 공공자전거 활용 시 공고 기간 경과 후 처분)
7. 문의처 : 순천시 교통정책과(☎061-749-6348)

순천시 공고 제2023-1650호

## 순천시금고 지정 신청 공고

순천시금고 약정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차기 시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관심 있는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7월 31일

## 순 천 시 장

1. 지정방법 : 공개경쟁
2. 약정기간 : 3년(2024. 1. 1. ~ 2026. 12. 31.)
3. 금고의 수 : 2개 금고
  - 제1금고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6), 기금(12)

기타특별회계 (6)	도시교통사업, 의료급여기금, 수질개선, 도시개발사업,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기 금 (12)	자활, 재난관리, 식품진흥, 투자진흥,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자원순환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 중소기업육성, 시청사건립, 농축산물가격안정, 옥외광고발전, 통합재정안정화, 고향사랑

- 제2금고 : 공기업특별회계(3)

공기업특별회계 (3)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	----------------------

※ 약정기간 내 기타특별회계와 기금, 공기업특별회계는 새로 설치 또는 폐지될 수 있으며, 공고일 이후 신설되는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은 제1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제2금고로 지정

#### 4. 금고의 주요업무

- 가. 지방세 등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 나.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 다. 유가증권(수입증지 등)의 출납 및 보관
- 라. 보관현금의 관리 및 운용
- 마.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등

#### 5. 신청 자격

- 가. 「지방회계법」 제3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은행법」 따른 은행으로 순천시 관내 본점 또는 지점(지부)을 둔 금융기관
- 나. 「지방회계법」 제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으로 순천시 관내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 6. 신청 방법

- 가. 「은행법」 에 따른 은행은 1금고, 2금고 구분 없이 신청
- 나. 「지방회계법」 제3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2금고에만 신청 가능

#### 7. 금고지정 신청절차 및 제안서 접수

- 가. 공고기간 : 2023. 8. 1.(화) ~ 8. 31.(목) / 31일간

## 나. 금융기관 사전 설명회 개최

- 1) 일 시 : 2023. 8. 16.(수) 15:00
- 2) 장 소 : 순천시청 소회의실(변경될 수 있음)
- 3) 주요내용: 금고지정 신청 안내 및 제안서 작성요령 설명 등

※ 설명회 자료는 당일 배부, 일정 및 장소 변경 시 관련 금융기관 개별 통지

## 다. 순천시 재무현황 자료 열람

- 1) 열람내용: 순천시 예산 및 세입·세출 결산 현황
- 2) 열람은 시 홈페이지([www.suncheon.go.kr](http://www.suncheon.go.kr)) 정보공개 → 재정정보에서 상시 열람가능

## 라. 제안서(신청서) 접수

- 1) 일 시 : 2023. 9. 7.(목) ~ 9. 8.(금) 09:00 ~ 18:00 / 2일간
  - 2) 장 소 : 순천시청 세정과(순천시 장명로 30, 순천시청 1층)
  -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제출은 허용하지 않음)
  - 4) 제출서류 : 금고지정 신청서 및 금고지정 신청안내서에서 지정하는 서류
  - 5) 제출부수 : 12부(원본 1부, 사본 11부)
  - 6) 작성요령 : 사전 설명회 시 제시하는 소정서식 및 신청요령 참조
- ※ 신청은행별 제안서 12부 확인 후 밀봉 예정이므로 접수 시 금융기관의 장 또는 위임을 받은 자의 사용인감 지참

## 8.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 붙임[1, 2]과 같음

## 9. 평가 및 지정방법

가.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신청서류)를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과 평가항목별

- 세부 평가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순천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세부 배점 기준을 확정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
- 나. 심의·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신청서류)를 근거로 하여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순천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제안서를 제출한 금융기관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설명 요청에 응하여야 하며, 불응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다. 순천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1순위 금융기관을 1금고로, 2순위 금융기관을 2금고로 지정함. 다만, 선순위 금융기관이 지정을 포기하는 경우 차순위 금융기관 순으로 지정함(「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 예외규정 발생 시 달리 지정할 수 있음)
- 라. 기타 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순천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름

## 10. 약정체결 및 손해배상

- 가.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나. 신·구 금융기관 간 금고업무 상호 인계·인수 시 기존금고에 예치한 정기예금 등에 대하여는 만기도래 후 인계·인수함
- 다. 전산시설의 경우 2024. 1. 1.부터 실제 정상 운영할 수 있어야 하며, 제시한 정상 가동 시한을 어길 시에는 소정의 지체상금 등 손해배상 책임을 짐
- 라.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이 금융기관에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는 당해 금융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며, 향후 금고 지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마. 금고지정 또는 약정체결 이후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금고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해당 금고지정 및 약정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게 있으며 향후 금고 지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11. 비용부담

가. 금고지정 신청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신청 금융기관의 부담으로 함  
 나. 금고 운영에 필요한 전산프로그램 개발, 운영경비 등 일체의 비용은 금고지정을 희망하는 신청 금융 기관이 부담함

## 12.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순천시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나. 제출한 제안서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접수마감 후 금융기관의 추가서류 및 보완서류는 접수받지 않으므로 제안서 작성과 제출에 주의를 요함

다. 작성내용이 허위로 기재되었을 경우 또는 제안서 내용 등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제안서가 무효 또는 일부 항목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정확히 작성하여야 함

라.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의 평가는 현금출연만 인정

마. 기타 세부사항 등은 금고지정 신청 설명회의 〈신청안내서〉에 따름

## 13. 기타 문의사항 : 순천시청 세정과(☎ 061-749-6115, 6117)

[붙임1]

## 순천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비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소 계	27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 기관 (4점) - 국내평가 기관 (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 평가	(8)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6점) - 자기자본이익율 (5점) - 유동성커버리지비율(2점)	(19)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소 계	20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	
	나. 자치단체 대출금리	(4)	
	다. 공금예금 적용금리	(6)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소 계	21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8)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6)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	소 계	25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 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8)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등)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3)	
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소 계	7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	
	나.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는 ‘실적’ 으로만 평가, “시와 협력사업” 은 ‘계획’ 으로만 평가	(2)	

[붙임2]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 I.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 II.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7점)

#####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점)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같은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 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단, 금융기관의 평가등급이 적정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예금의 안정성을 위해 0점 처리)

####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9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 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 「지방회계법」 제3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합 등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 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1) 총자본비율 (6점)
  - (2) 고정이하여신비율 (6점)
  - (3) 자기자본이익율 (5점)
  - (4) 유동성커버리지비율 (2점)

## 2. 순천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20점)

###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 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나. 자치단체 대출금리 (4점)

- 시장이 제시하는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다. 공금예금 적용금리 (6점)

- 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점)

-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적용기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21점)

## 가. 관내지점의 수 및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대수 (8점)

- 시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입금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순천시에 소재한 관내 지점의 수(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 되는 지점은 제외) 및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대수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단, 순천시에 소재한 점포수가 적정수준 이하인 금융기관이 금고예금의 유치를 목적으로 경쟁에 참가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시켜 0점 처리)

※ “지점”이란 인적·물적 설비를 모두 갖추고 금융영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고 본점, 지점, 지소 등 명칭을 불문한다. 또한, 시민의 금융거래와 납세 편의를 위해 동일 건축물에서 2

개 이상의 지점을 운영하는 경우는 1개의 지점으로 본다.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6점)

- 최근 수년간 지방세입금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점)

-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추진실적 및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파업 및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 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5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점)

- 지방세 등 세입금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 전산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점)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8점)

-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능력, 세입·세출 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능력, 자금 관리 및 지방세입금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 안을 제

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등)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3점)

- 수납시스템(OCR센터 등)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활동 및 지역 사회의 사회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 (2점)

- 시에 협력사업비 출연금 지원계획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